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2019. 9.16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제 27조 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2019.9.16) 이후, 당사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2026.6.22)부터 주주(권리자)가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주주(권리자)는 당사의 전자등록 시행 예정일 5영업일 전(2026.6.15)까지 증권회사 계좌(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전환 대상 주권)을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 조치 사항

증권계좌를 제출한 주주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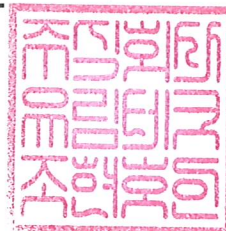
- 실물증권 보유 주주 및 증권계좌 미제출 주주는 전자등록 시행 예정 5영업일 전(2026.6.15)까지 당사에 소유중인 실물증권 및 증권계좌 사본을 제출하고 계좌에 입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발행인)는 전자등록 시행일(2026년 6월 22일) 직전 영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2026년 5월 20일

주식회사 유림테크

대표이사 조현호



전자증권 관련 증권계좌 제출 안내

당사에서는 주주님들의 주식을 미발행하여 주식미발행확인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26년 5월 21일부터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전자증권 전환업무를 시작합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주주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아 래---

1. 제출서류

*개인

- 1) 신분증(앞면) 사본
- 2) 증권회사 계좌 사본
- 3) 주식미발행확인서

*법인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증권회사 계좌 사본
- 3) 주식미발행확인서

2. 제출기간: 26.05.20 ~ 26.06.15

3. 제출방법: 우편, 전자메일, 팩스 중 택1

4. 제출처:

*우편

경상남도 창원군 대합면 대합산업단지 68-54 (주)유림테크 회계팀
(우편번호: 50307)

*전자메일

seyang@yulim-tech.kr

*팩스

055-532-6258 (전화번호: 055-532-6257)